의안번호	2212358
의 뢰 인	한준호의원
회 답 일	2025.11.17.
추계번호	25B446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2 신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35조제2항제8호 신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1]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제2항) 8. 제29조[2]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재량규정

1) 안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
19.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
1	안 제27조의2 신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5조제2항제8호 신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미대상: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되어 위탁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음 –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그린리모델링(공공·민간건축물) 재정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참고자료 2] 참조)

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

(단위 :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토안전관리원	공공부문	1,995	1,851	1,275	1,089	6,209
	민간부문	3	5	1		9
	소계	1,998	1,855	1,276	1,089	6,218
한국부동산원		-	-	-	57	57
합 계		1,998	1,855	1,276	1,145	6,275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의무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을 이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동법 제27조[3]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표 1]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6132-300)	185,067	127,517	114,53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의무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공사비용은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이며, 대상 건축물의 노후화의 정도, 에너지 성능수준을 알 수 없고, 건물별 시설 정비 방법과

3)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사의 종류 등이 상이하여 현시점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의무추진 공공건축물을 선정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관련한 지원업무의 확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의무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공건축물의 연면적과 노후화 상태 등에 따라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6132-300) 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노후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4)]* 목표 달성 기여

○ 공공선도적 사업추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표준화하여 민간으로의 확산 도모 및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하고,

○ 심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계층(노유자 등 취약계층)에 기후위기 적응공간 마련

❑ (사업내용)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고성능 단열 및 창호, 고효율 냉·난방기기 교체, 신재생설비 설치 등을 지원

❑ (사업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27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 등

❑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보조

* 서울·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50%, 서울外 지자체 70% 매칭

○ 수행주체: (주관) 국토교통부, (보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 사업수혜자 :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중앙)부처		(상위)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사업 수혜대상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센터		지자체, 중앙·공공		일반국민
· 기본계획 수립 · 보조금 사업기획 · 사업계획 검토·평가 · 사업 총괄·발굴 · 지도 및 점검 · 기술보급 추진 · 활성화 및 확산	→	· 보조금 사업공모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점검 · 사업지원 및 관리 · 연구 및 개발도입 · 교육 및 홍보 · 효과분석 및 환류	→	· 사업대상 발굴·신청 · 지방비(부담금)확보 · 공사발주 및 시행 · 공사 관리·감독 · 추진현황 파악 · 사업실적 제출 · 보조금 집행·정산	→	·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쾌적한 공공시설 이용 · 산업생산유발 · 지역일자리 창출 · 그린리모델링 확산

4) * (건물부문 NDC 상향안 수정, '23.3) : ('18년) 52.1 →('30년) 35.0백만톤 (△32.8%)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실적

○ (지원실적) 총 1,440동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선정

《지역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동)

지역	’23년	’24년	’25년	합계	지역	’23년	’24년	’25년	합계
서울	51	35	13	99	충북	41	25	13	79
부산	13	4	3	20	충남	74	45	14	133
대구	2	6	4	12	전북	32	22	18	72
인천	21	8	6	35	전남	76	78	13	167
광주	13	5	1	19	경북	35	68	10	113
대전	21	7	9	37	경남	27	34	121	182
울산	3	3	–	6	제주	6	5	2	13
세종	4	2	–	6	중앙	4	–	2	6
경기	34	56	23	113	공공	1	4	–	5
강원	159	155	9	323	합계	617	562	261	1,440

《용도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동)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어린이집	72	58	–	130
보건소	127	163	37	327
의료시설	4	1	–	5
경로당	376	340	187	903
도서관	38	–	12	50
기타노유자시설	–	–	15	15
기타교육시설	–	–	2	2
기타공공시설	–	–	5	5
기타용도	–	–	3	3
합계	617	562	261	1,440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현황(최근 3년간)

○ (지원예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시공비 등 직접지원 비용으로 국비 총 3,712억원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지원 사업 예산	1,710	835	2,545	1,031	489	1,520	971	473	1,444	3,712	1,797	5,509

[참고자료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설립근거) 「녹색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업무 전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주요업무) 국토안전관리원(`21년~), 한국부동산원(`24년~)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기관명	주요업무
국토안전관리원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수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및 사업총괄 관리업무 수행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관리 및 평가업무, 그린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업무 수행 중

일 자	(※ 참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경위
'12.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13.12.	한국시설안전공단(現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15.05.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 이관 내용 포함)
'15.12.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관(공단 → L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20.04.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에 그린리모델링 포함으로 지원규모 확대
'21.07.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재지정
'21.09.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따라 LH 기능조정
'23.01.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사업 종료 및 이관(LH → 관리원)
'24.12.	한국부동산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추가지정
'25.03.	그린리모델링 지역센터(세종) 운영 (국토부·관리원·부동산원 공동운영)

❑ 재정지원 현황

《 공공 및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재정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토안전관리원	공공부문	199,487	185,053	127,503	108,864	620,907
	민간부문	346	476	100	–	922
	소 계	199,833	185,529	127,603	108,864	621,829
한국부동산원		–	–	–	5,660	5,660
합 계		199,833	185,529	127,603	114,524	627,489

❑ 사업내용 및 실적

○ (공공부문) 공공의 선도적 추진으로 민간으로의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직접 지원사업과 단계적 의무화를 병행 추진

– (직접지원) 국민생활 밀착형(취약계층이용, 에너지다소비 등) 공공건축물에 공사비를 매칭 지원하여 에너지성능 개선('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실적》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사업실적(동)	821	895	575	617	562	261	3,731
국비지원(억원)	2,180	2,141	1,836	1,710	1,031	971	9,896

– (종합사업사업)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One-Stop 서비스 제공 및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하여 사업관리 효율성 확보

구 분	지원사업 단계	주요내용
공모 前	① 기획·계획	· 희망건축물 자격검토 · 건축물의 현황조사, 에너지 분석 및 안전점검 · 공사 후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 최적의 사업계획(안) 제시 (적용 공사요소 및 총 사업비 포함) 등 · 대상선정을 위한 배점표 작성
공모 後	② 설계·시공	· 사업계획(안) 내용 및 사업변경 자문 · 설계·시공 전 단계의 기술·행정 지원 등
	③ 준공 이후	· 공사 후 에너지 분석을 통한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안전점검 등

– (의무화)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5]하기 위해 기반마련 연구[6] 및 제도·기술·행정 지원 등 추진

– (활성화 지원) 그린리모델링 저변확산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21~), 산업발굴 경진대회**('24~) 등 추진

구분	추진 목적 및 주요업무
지역거점 플랫폼	각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기획·지원 • 연구경진대회/지역정책특화사업 추진('23년 32개, '24년 6개) • 그린리모델링 공사완료대상 품질검사('23년 185건, '24년 245건) • 지역역량 강화* 및 홍보** 등 * 교육 : 23년 640회, '24년 191회 / 인턴쉽 등 : '23년 380인, '24년 439인 ** 기자단 : '21년 42인, '22년 48인, '23년 55인, '24년 33인 챌린지 : '21년부터 총 4회 개최
산업발굴 경진대회	전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지속적 산업발굴 체계 구축) • ('24년) 10개 기관 공모에 지원·참가하여, 최종 6개 과업 선정 • ('25년) 12개 기관 공모에 지원참가하여, 최종 5개 과업 선정

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법안 발의('25.3) 및 하위법령 마련 중

6)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계수 산정 및 배출량 평가방안 마련 고도화', '그린리모델링 핸드북 마련' 등 연구과제 수행

– (교육지원) 사업관계자[7] 대상으로 설명회 및 워크샵 등을 통한 지원·운영 등에 관한 교육으로 사업 이해도 제고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상반기)	합계
설명회·워크샵(회)	10회	10회	14회	9회	43회

- (홍보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체감도 확산을 위해 종합 홍보[8] 추진 및 홍보관[9] 구축 등

홍보영상(언론매체 홍보)	SNS 기획운영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 (민간부문)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 이자지원 사업 추진(’14~’23)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25.7월 기준)>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사업 승인(건)	352	2,753	7,742	8,551	9,278	11,427	12,005	11,955	7,217	8,381	–	–	79,640
예산 (백만원)	2,000	3,000	800	1,658	3,200	6,788	8,296	10,217	10,242	8,076	6,360	5,300	65,937
이자지원 (백만원)	31	476	800	1,658	3,200	6,547	6,082	6,743	6,807	6,778	6,021	1,736	46,879

- 현재 이자지원 사업 신규 접수는 중단된 상황이며,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자체·민간 매칭사업[10]* 에너지 컨설팅 사업 추진 예정(’26년~)

7) 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자(설계·시공) 등
8) 방송기획,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홍보, 홍보물품 제작 박람회 등 진행
9) 그린리모델링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상설홍보관 구축(’24.12/서울)
10) 민간이 최소 50% 부담하며, 나머지 정부지원 50% 중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은 지역별 차등적용(서울은 5:5, 그 외 지자체의 경우 7:3)